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正方向에 關한 研究

李 庸 俊

<目 次>

- I. 序 言
- II.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特質
 - 1. 財務會計의 基本的 特徵과 基本要素
 - 2.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 1) 全般的 原則
 - 2) 廣範한 運用原則
- III.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定方向
 - 1. 一般原則에 대한 補完
 - 2. 財務諸表의 內容과 樣式의 補完
 - 3. 損益計算書 內容의 補完
 - 4. 貸借對照表 內容의 補完
- IV. 結 言

I. 序 言

우리나라에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이 1958年 7月에 制定・告示된 지도 15년이 지났다. 이들 原則 및 規則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企業의 會計 實務를 指導하는 基準으로서 많은 역할을 擔當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擔當할 것이다.

企業會計原則의 總說에 의하면, 企業會計는 “財務諸表에 의하여 企業의 經濟的 資產의 發生 消滅과 그에 따라 發生하는 企業에 대한 利害關係의 變化를 忠實히 報告함은勿論 다른 期間과 다른 企業의 財務諸表와도 比較할 수 있도록 統一的이고 客觀的으로 定義된 諸原則에 依據하여 處理되어야” 하며, 또한 企業會計原則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企業會計의 實務속에서 發達된 諸原則 가운데서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法令에 의하여 強制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企業이

그會計를 處理함에 있어서 遵守하지 않으면 안될 基準”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이 實제로 우리 나라의 會計實務속에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어 成文化된 것이 라기 보다는 政府當國에 의해서 政府主導的으로 制定·告示되었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지난 15年間 우리나라 經濟社會는 상당한 發展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企業의 規模도 急速히 擴大되었다. 더우기 1973년에 들어와서는 企業公開促進法이 施行되게 되고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과 證券去來法이 改正되고, 이를 法에 따라 政府는 110個 公開對象企業의 財務諸表 提出을 要求하였다. 最近 數個月間 이미 相當數의 大企業들이 株式을 公開하였으며 餘他의 大企業들도 株式公開를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企業의 大規模化·公開化에 따라 企業과 直接·間接으로 關係를 맺고 있는 利害關係者가 점차 增加되어 가고, 이들은 企業을 通하여 各者の 利益을 추구하게 되므로, 企業의 經營成績이나 財政狀態는 크나큰 社會의 關心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經營成績이나 財政狀態를 把握하기 위한 資料로는 企業이 作成 提出하는 財務諸表가 核心的인 役割을 달게 된다. 따라서 廣範하고 多樣한 企業의 利害關係者 集團의 保護라는 觀點에서 企業이 作成하는 財務諸表에 대해 公信力を 強化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法은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查를 實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公認會計士의 責任問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¹⁾

(1)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2 (公認會計士에 의한 監查證明).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部長官 또는 證券去來所에 財務에 관한 書類를 提出하는 者중 上場法人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그 書類의 內容에 관하여 公認會計士 (會計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監查證明을 받아야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查를 받아야 하는 者(이하 被監查法人이라한다.)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財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指名한 公認會計士의 監查證明을 받아야 한다.
- ③ 前各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查證明을 하는 公認會計士의 資格要件과 監查의 實施 및 報告基準과 須次の 財務部令으로 정한다.
- ④ 財務部長官은 公益 또는 投資者的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查證明을 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그 監查에 관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 ⑤ 財務部長官은 公益 또는 投資者的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被監查法人에 대하여 提出하는 財務에 관한 書類의 記載事項에 관하여 理由를 提示하고 그 訂正 기타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同 第126條의 7 (公認會計士의 損害賠償責任).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하는 被監查法人의 財務에 관한 書類中 重要한 事項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가 있거나 記載할 重要한 事項 또는 誤解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重要한 事實의 記載가 누락된 것을 虛偽가 아니거나 누락되지 아니하였다고 證明한 公認會計士는 그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善意의 投資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②, ③ 項 省略

금번, 政府는 새로운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修正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作業이 지금의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正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全面的으로 새로운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을 制定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73年 2月 6日에 改正된 證券去來法은 第126條의 8에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令으로 定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第126條의 9에서 財務諸表의 用語, 樣式 및 作成方法을 財務部令으로 定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는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이 財務部長官의 告示에 의하였던 것 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을 의미한다.⁽²⁾

企業會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法人稅法이 1967年 11月 29日 以來 1973年 3月에 이르기까지 무려 8회에 걸친 大・小의 改正作業을 해온데 비해서, 企業會計에서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는 企業會計原則이 15년이 지나도록 改正되지 않다가 이제와서 改正作業이着手되었다는 것은 時期的으로 너무 늦었다는 感이 든다. 成文法이 없는 美國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公認會計士協會와 會計學會에서 꾸준히 會計原則에 관한 報告書를 發表하여 오고 있고, 또한 日本의 경우에도 1949年 7月에 經濟安定本部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查會가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準則을 告示한 이래 1954年 7月에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準則을部分修正하고 이어 1963年 11月에 다시 企業會計原則을 一部 修正하였고 1969年 12月 16日에 다시 企業會計原則修正案으로서 大藏省 企業會計 審議會 報告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企業環境이 비교적 安定된 先進國에서도 계속 改正作業을 하고 있는데 반해, 企業環境이 急變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뒤늦게 改正 내지 制定作業에着手하였다라는 것은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重要性을 相對的으로 輕視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此際에 本論文은 이러한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을 改正 또는 制定하는데 있어서 美國이나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變化趨勢를 살펴보고 外國의 會計理論을 참작함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알맞는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을 制定할 方向을 摸索하는 것을 그 主要한 目的으로 삼고 있다.

(2)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8 (會計原則).

- ① 上場法人 其他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者의 會計와 公認會計士의 監查에 統一性과 客觀性을 부여 하기 위하여 第126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 ②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原則에 따라야 한다.

第126條의 9 (財務諸表의 用語, 樣式 및 作成方法)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되는 財務에 관한 書類는 第126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財務部令이 定하는 用語, 標準樣式 및 作成方法에 따라 作成되어야 한다.

- ② 前項의 財務에 관한 書類의 用語는 財務部令으로 定한다.

(證券去來法, 改正 1973. 2. 6 法第2481號)

II.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特質

單純한 商業帳簿의 記帳技術에서 비롯되었던 企業會計는 現代經濟에 있어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重視되게 됨에 따라, 企業會計는 社會的인 技術 以上의 것이 되어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 되기에 이르렀다.

1941年 美國會計士協會(AIA) 會計用語委員會의 定義에 의하면, 會計는 “財務的性格을 가진 去來나 事件을 意味하는 方法으로 貨幣에 의하여 記錄, 分類, 要約하며 또 그 結果를 解釋하는 技術”이다⁽³⁾. 또한 「코울러」(E.L. Kohler)는 具體的인 會計의 内容으로서 去來를 記錄 報告하는 데 있어서 ① 記錄方法과 內部統制의 計劃 및 制度立案 ② 去來의 記錄(簿記) ③ 企業財產의 管理와 統制의 效率性 및 正確性을 위한 持續的인 調查(內部監查) ④ 期間別로 外部人에 의한 監查(外部監查) ⑤ 利害關係者에게의 經營에 關한 必要한 情報의 提供等을 列舉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廣範한 의미를 가진 會計의 端極的인 目的是 「페아튼」(W.A. Paton)과 「리틀튼」(A.C. Littleton)의 表現을 빌지 않더라도 企業의 財務的인 資料를 整理하여 經營者, 投資家 및 一般大眾에게 提供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見解에 의하면 財務會計와 財務諸表의 基本目的是 “財務諸表의 利用者들 特히 所有者, 債權者들이 經濟의in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計量的인 財務情報를 提供”하는 데 있다⁽⁵⁾. 또한, 이 目的是 다시 財務會計情報의 적절한 内容을 決定해주는 一般的인 目的(general objectives)과 有用性있는 財務會計情報의 質을 規定하는 質的인 目的(qualitative objectives)으로 나누어 지며, 이들 目的是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을 改善하고 評價하는 指標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財務會計情報의 内容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一定日에 作成된 特殊財務諸表에 적합한 内容과 둘째는 特定日의 會計慣行과는 상관없이 一般的인 目的에 따라 財務會計情報의 内容을 調査作成하는 것이다. 特殊財務諸表의 目的是 一般的으로 認定된 財務諸表의 目的에 따라 特定日의 財政狀態, 營業活動의 結果, 財政狀態의 變化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은 多樣한 要因에 의해 變化하게 되므로, 一般的인 目的은 이러한 會計原則의 變化方向까지도 提示하려는 것이다.

(3) AI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4) E.L. Ko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 3rd ed.; Prentice-Hall, p.10.

(5) AICPA, Statement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 4, Oct., 1970, Paragraph Nos. 21-24, Nos. 73-75.

이러한 一般目的은 情報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에게 企業活動의 内容을 傳達하는데는 기여하지만, 會社活動內容 즉 財產, 債務等의 增減變化를 資產, 負債, 收益, 費用 等의 財務會計 方式으로 測定, 報告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質的 目的是 財務會計情報보다 有用하게 하는 것으로서 社會全體의 全般的인 真實, 正義 等의 倫理的 目標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質的 目的是 다음과 같은 内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關聯性(relevance)

關聯性 있는 會計情報은 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서 質的 目的의 基本이 된다.

2) 理解可能性(understandability)

理解可能性 있는 會計情報은 情報利用者가 理解할 수 있게끔 資料를 제시하고, 利用者가 理解可能한 범위내의 形式과 用語를 使用하여야 한다.

3)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會計情報은 獨立된 두사람 以上의 適格者가 같은 測定方法을 사용하여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中立性(neutrality)

會計情報은 小數의 特殊 利用者나 혹은 特別한 目的을 위하여 作成되는 것이 아니고 多數의 共通된 目的을 위하여 作成된다.

5) 適時性(timeliness)

會計情報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充分할 만큼 傳達되어야 하며 결코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6) 比較可能性(comparability)

會計情報은 단지 會計處理의 差異 뿐만이 아니고 去來自體나 企業 또는 產業으로서의 同質性이나 差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7) 完全性(completeness)

完全性은 지금까지의 다른 質的인 目的을 合理的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會計情報を 包含하여야 한다.

이러한 質的 目的是 過去 AAA가 發表한 基礎的 會計情報基準인 1) 關聯性(relevance) 2)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3) 不偏性(freedom from bias) 4)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의 諸基準보다 크게 擴大된 것이다. 이러한 會計基準에 대한 基本思想은 우리나라 企業會計 原則의 一般原則에도 이미 어느 정도 反影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된 修正 및 補

完事項에 대해서는 節을 달리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1. 財務會計의 基本的 特徵과 基本要素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會計原則審議會 (APB) 第4號 報告書의 第5章에서 說明하고 있는 財務會計의 基本的 特徵과 基本要素는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財務會計에 미치는 環境的 要素의 影響을 縮約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會計學 教科書에서 說明하고 있는 會計의前提의 內容을 보다 擴大시킨 것이다.

이 基本的 特徵의 內容은 모두 13個로 構成되어 있는데 要約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⁶⁾

1) 會計實體(accounting entity)

會計情報은 個別企業의 經營活動에 焦點을 맞추어, 그 기업의 財務諸表는 그 企業과 同一하게 되며, 그 범위는 法律의 인 實體와도 같지 않은 獨立된 것이 된다.

2) 繼續企業(going concern)

財務會計은 基本적으로 企業의 相對的 永久性 때문에 繼續企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企業의 清算이 절박해졌다면 繼續企業으로 看做될 수는 없다.

3) 經濟的 資源과 債務의 測定(measurement of economic resources and obligations)

財務會計의 基本問題는 企業의 經濟的 活動과 經濟的 資源의 創造, 蓄積, 使用을 測定하고 報告하는 것이다. 經濟活動은 財務會計에서 計量化(quantified)될 것이 要求된다.

4) 期間(time periods)

財務會計은 企業의 生命보다는 짧은 特定期間을 단위로 企業의 經濟活動에 관한 정보를 提供한다. 이 기간은 正常的으로 比較可能하게끔 一定하여 財務諸表와 一致시킨다.

5) 貨幣的 測定(measurement in terms of money)

會計는 經濟活動과 役務 및 其他 變化를 貨幣單位로 表示하게 되어 있다.

6) 發生(accrual)

期間收益과 財政狀態의 決定은 經濟的 財產과 債務와 其他 變化를 여하히 측정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貨幣의 收支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7) 交換價格(exchange price)

貨幣的 測定은 주로 交換價格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同一한 經濟的 財產 및 債務의 現在價格으로 交換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AICPA, Ibid., pp. 44-53.

8) 概算(approximation)

財務會計의 測定은 相對的으로 짧은 會計期間과 이에 따른 繼續性, 活動의 複雜性, 不確實性과 結果의 複合性 때문에 概略的인 推算이 必要하다.

9) 判断(judgement)

財務會計에 概算이 必要함에 따라 고정적인 尺度下에서 會計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情報에 의한 정확한 判断이 중요하게 된다.

10) 財務情報의 一般目的 (general purpose of financial information)

財務會計情報의 一般目的은 所有者, 債權者, 經營者와 其他 現在 및 未來의 所有者 및 債權者들의 共通의인 必要性을 민족시켜줄 수 있게 作成되어야 한다.

11) 財務諸表와의 基本的인 關聯性(fundamentally related financial statements)

會計過程의 結果는 貸借對照表에 表示되어야 하고, 財政狀態의 變化는 基本的으로 關聯된 同一한 資料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12) 形式에 우선한 本質(substance over form)

法的形式이 經濟本質과 다르고 다른 取扱方法이 要求될 경우에 會計人은 法的形式보다 事象의 經濟的 本質을 重要視하여야 한다.

13) 重要性(materiality)

財務報告는 評價나 意思決定을 행하는데 관련되는 중요한 情報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APB報告書는 財務會計의 基本的인 要件을 설명하고 이어 3章에 걸쳐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대해 說明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向에 많은 參考가 될것으로 考慮되므로 이 報告書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과 比較 說明하고자 한다.

2.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은 財務會計上의 用語로서 어느 特定時期의 會計實務를 規定하는 會計慣習, 規則 및 節次를 包容하는 것으로서 廣義의 指標(guide line)일 뿐만 아니라 會計實務와 節次의 基準이기도 하다.⁽⁷⁾

會計原則은 대체적으로 特定時期에 있어서 經濟的 資源 및 債務 중 어느 것을 財務會計上의 資產이나 負債로서 취급하며, 또한 資產과 負債의 變化 중 어떤 變化를 記錄할 것인

(7) AICPA, "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 Statements on Auditing Procedure, No.33, p. 40.

가하는 記錄對象의 選定에 關한 問題, 記錄의 時期에 關한 問題, 이들 變化의 測定 方法에 關한 問題와 公開해야 할 情報內容과 公開의 方法에 關한 問題, 財務諸表의 作成에 關한 問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會計原則은 이들에 대한 意見의 一致 내지는 合議를前提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會計原則이 어떤 假定이나 基本的인 概念으로 부터 유도된 것이라기 보다 經驗, 論理, 慣習, 實務的인 必要性 등등의 이유로 合議에 의하여 形成되는 因習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會計原則은 다음과 같은 3系層으로 區分할 수 있다.⁽⁸⁾

- ① 財務會計全般 및 다른 原則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全般的 原則(pervasive principles)
- ② 財務會計過程上의 記錄, 測定, 意思傳達의 指導原理로서의 廣範한 運用原則(broad operating principles)
- ③ 위의 두가지 原則의 實務的인 應用原則으로서의 細部的인 原則

1) 全般的 原則

會計人們이 企業의 財政狀態나 營業活動의 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事象을 認識·測定하는 데 있어서의 一般的으로 적용되는 原則을 全般的 原則이라고 하며 이는 다시 全般的 測定原則(pervasive measurement principles)과 修正慣習(modifying conventions)으로 區分된다. 前者の 全般的 測定原則은 發生主義會計의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 會計過程에 記入되는 資料, 時期, 金額을 결정하는 初始記入原則(initial recording principle)과 一定會計期間 동안 企業의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키고 이들을 測定·認識하는 利益決定原則(income determination principle)으로, 收益은 實現主義로 認識되고, 費用은 取得原價와 獨立的으로 決定되는 收益과의 關係를 기초로 決定하게 된다.

이를 具體的으로 檢討하면, 收益은 企業의 利益指向活動으로 所有者持分을 變化 시키거나 資產을 增大 혹은 負債를 減少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收益은 慣習의 交換過程, 즉 資產을 팔 때나 用役을 提供하는 企業의 收益獲得活動을 통하여 發生되는데, 全般的 原則은 實現主義로 說明된다. 물론, 長期建設契約의 경우와 같이例外가 있으나, 收益獲得活動이 實質적으로 完了되고 交換이 끝나야 비로소 收益이 發生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서 收益을 “①企業의 生產物, 또는 役務의 賣出에 의하여 取得한 資產의 金額 또는 決濟된 負債의 金額, ②在庫品以外의 資產의 賣出 또는 交換에 의하여 얻어진 利得, ③負債金額 以下의 有利한 決濟로 얻은 利得等을 包括한 概念”

(8) AICPA, op. cit., p.55.

으로 定義하고, 또한 營業收益의 測定은 實現主義原則에 의한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⁹⁾

費用은 利益指向活動으로 부터 招來된 資產의 減少나 負債의 增加로 認識되는데, 費用의
內容에는 ① 收益을 얻기 위해 使用되는 資產의 原價(例; 賣出原價, 一般管理販賣費, 支
給利子) ② 代價가 없는 移轉費用이나 偶發事故에 의한 費用(例; 稅金, 火災, 盜難事故) ③
投資된 資產의 原價(例; 他社에 存在하는 自社의 機械 및 工場, 投資) ④ 失敗한 努力때
문에 發生된 原價 ⑤ 販賣目的으로 保有한 製品 在庫의 價格下落으로 인한 損失 等과 같
이 차세한 區分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費用은 純利益의
測定에 있어서 收益에서 控除될 資產의 原價이다. 이러한 控除는 現金의 支出, 資產의 原
價全部, 또는 一部의 消耗, 혹은 負債의 負擔에 의하여 發生한다. 費用은 營業費用과 損
失로 區分된다. 營業費用은 收益의 發生과 關聯이 있는 控除이며, 損失은 그려한 關聯이
없는 控除이다”라고 하여⁽¹⁰⁾ 대체적으로 비슷한 内容을 가지고 있으나, 定義에서 본 바와
같이 收益에서 控除될 資產의 原價라기보다는 收益에서 控除될 項目 또는 金額이라고 하
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APB의 第4號報告書는 이어 費用은 期間收益과 대응되어 發生되는 것이며 未來收益과
연결 되는 것이므로 “原因과 結果의 대응(associating cause and effect)”과 “體系的이고 合
理的인 割當(systematic and rational allocation)”과 “즉각적인 認識(immediate recognition)”
등의 세 가지 原則을 費用의 認識方法으로 삼고 있다. 이 原則들은 費用을 인식하는데 있
어서 收益과 費用이 명백하게 對應되게 計上을 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 費用을 體系的이고 合理的으로 割當을 한 것이고, 未來의 收益과 關聯이 없거나 數
期間에 걸쳐 發生하는 費用이 어느 特定收益과 關聯 시키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期間에 費用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서 費用과 收益은 그 支出과 收入에 의거하여 計上하
되 그것이 發生한 期間에 正當하게 配分이 되도록 處理하라는 發生主義 原則⁽¹¹⁾과 損益
科目的 對應表示에 관한 原則⁽¹²⁾과 類似한 것이긴 하나, “即刻的인 認識”과 같은 原則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會計原則에는 없는 測定 單位의 原則(unit of measurement)은 美貨인

(9)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1節 第1目 第2 및 第2章 第2節 第3参照

(10)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1節 第1目 第3.

(11)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1節 第2目 第1.

(12)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1節 第2目 第4.

달라를 美國에 있어서 會計의 測定單位로 使用할 것과 달려의 購買力의 變化는 基本的인 財務諸表에 인식시키지 않도록 하는 原則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때문에 發生되는 貨幣價值의 變動을 基本的인 財務諸表에 反影시키지 않도록 하는 原則이지만 이 러한 貨幣價值變動의 영향을 極少化시키기 위하여 使用되는 先入先出法이나 後入後出法과 같은 方法까지 否定하는 것은 아니고, 一部에서 使用하고 있는 價格變動修正會計와 같이 財務諸表를 수정하는 것은 基本的인 財務諸表에는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全般的 原則은 財務會計上의 測定問題를 實際的으로 可能하게 하지만 모든 狀況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結果를 提供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全般的인 原則이라고는 하지만 實際적으로 알맞지 않은 경우나 財務諸表上에 特殊問題라고 看做되는 것은 널리 使用되어 오는 慣習에 따라 除去 또는 修正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修正된 慣習(modifying conventions)의 例로서 保守主義(conservatism)와 利益의 強調(emphasis on income)를 들고 있는데 이는 全般的 原則에 따라 計算, 測定한 것보다 收益을 적게 잡는 것으로 과거의 經營者나 投資家들의 하나의 慣習이 原則化한 것이다. 그리고 全般的 原則이 잘못 적용되거나 發展되는 경우에는 會計人들의 健全한 判斷을 기초로 하여 全般的 原則을 修正할 것을 說明하고 있어 이러한 會計原則이 絶對的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부연하고 있다.

2) 廣範한 運用原則

이 原則은 財務會計에 있어서 事象(events)을 選定, 測定, 報告하는 指針으로서 全般的 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또한 細部的運用原則과 연결을 해 주는 것이다. 會計業務는 事象을 選擇하고, 分析하여 結果를 測定, 分類하고 記錄하며, 記錄된 結果를 다시 要約하고 調整하여 그 情報를 財務諸表의 形態로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으로 그 任務를遂行하고 있다. 이 廣範한 運用原則은 ① 選定 및 測定에 관한 原則과 ② 財務諸表作成에 관한 原則의 2範疇로 區分하고 있다.

첫째의 選定 및 測定에 관한 原則은 ①企業에 計上된 事象을 選定하는 指針이 되고, ②選定된 事象이 企業의 資產, 負債, 持分(equity), 收益 및 費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決定하고, ③이들 事象의 結果에 대한 金額을 賦與하는데 指針이 되는 會計慣習을 말한다.⁽¹³⁾

이 러한 測定을 하는 基準으로는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歷史的原價(historical cost) ②購入時價(price in a current purchase exchange) ③販賣時價(price in a current

(13) AICPA, APB, op.cit., p. 69.

sale exchange) ③ 未來交換價格(price in future exchange)이다. 그리고 選擇 및 測定에 관한 原則의 內容을 經濟的 資源, 經濟的 債務 및 殘餘權利를 變화시키는 事象의 分類에 따라 일일히 說明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정도로 상세하게 解설하고 있다.

財務諸表作成原則은 財務會計過程에서 나타난 意思 傳達(communication)의 指針으로서, 一般的인 目的是 提供되는 情報의 形態를 取扱하고 質的인 目的是 原則의 內容에 영향을 미치는 有用한 情報의 特色을 說明하고 있다.⁽¹⁴⁾

財務諸表의 質的基準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따라 企業의 財政狀態와 營業成績을 충실히 表現하였는가를 判斷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어 基本的인 財務諸表로서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計算書, 株主의 持分變更, 이밖에 闡述된 註釋을 들고 있고 각각의 定義와 會計期間, 聯結財務諸表, 持分, 運轉資本, 非正常的 特殊項目, 純利益, 財務諸表의 樣式 等 11個의 原則를 提示하고 있다.

이어 細部的 會計原則(detailed accounting principles)은 具體的으로 說明하지 않고 APB의 意見書나 會計研究報告書에 說明을 委任하고 있다. 이는 細部的 會計原則이 環境에 따라 變化할 可能성이 높기 때문이다.

III.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正方向

前章에서는 最近에 發表된 美國 公認會計士協會의 APB 第4號報告書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內容과 比較하여 보았다.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內容은 列舉式으로 되어 있고, 各項目을 記載한 후에 簡略한 定義를 내리고 있어 實際로 適用하는 데 問題點이 많다.⁽¹⁵⁾ 더구나 우리나라 財務諸表規則은 財務諸表의 作成을 中心으로 各 計定科目을 羅列하고 그에 대한 說明을 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企業慣行의 變化와 企業의 特性을 살린 計定科目이 새로이 만들어져 使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 우의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의 修正方向은前述한 바와 같이 企業의 特色을 살려 各項 目別로 구체적인 解說 및 意見을 불여 說明을 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겠으나 우리나라의 現實情은 그렇지 못하며, 더구나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이 大統領令 내지는 財務部令으로 公布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상세한 說明이나 意見의 提示는 現在로서는 不可能한 狀態이다.

(14) AICPA, Ibid., pp. 90-94.

(15) 拙稿,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向” 經營論集 第Ⅳ卷 第1號, 1972, 參照. 이러한敘述方式의 困難性에 대하여는 APB의 報告書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節에서는 이러한 會計原則 修正方向에 따라 현재 있는 事項을 變更 또는 補充하는 일과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 없는 것으로서 必要한 事項을 項目別로 補充하고자 한다.

1. 一般原則에 대한 補完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一般原則은 9가지에 달하는데 이는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이나 美國 AAA 會計原則의 一般原則에 비하여 數字上으로는 많으나, 그 内容은 두나라의 경우와 大同小異한 것이다.⁽¹⁶⁾ 따라서 이 一般原則의 内容을 같은 内容끼리 綜合하는 것이 合理的이며 또한 이와 더불어 不足한 内容을 補完하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

우선 現在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의 基本思想을 살펴보면, 이는 AAA 가 發表한 會計基準에서 會計行爲를 規制하고 동시에 그妥當性을 判斷하기 위한一般的 會計基準(general accounting standards)과, 會計情報의 有用性을 保證하고 또 그것을 判斷하기 위한個別的 會計基準(specific accounting standards)의 兩者와 대체로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全般的原則인 一般原則은 現在 内容上의 重複이 있다.⁽¹⁷⁾ 그 例로서 一般原則의 第2, 正規簿記의 原則은⁽¹⁸⁾ 正規簿記의 意味에 많은 論議가 있어 왔으며 實際로 正規簿記의 原則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로, 正規簿記의 原則은 真實性의 原則을 根據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正規簿記의 最終產物인 財務諸表가 企業의 真實과 公正한 狀況을 報告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⁹⁾

둘째로, 正規簿記의 原則은 重要性의 原則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真實한 報告의 原則을 근거로 하여 金額과 科目的 重要性에 따라 또는 不正・誤謬가 생길 相對的 危險에 따라 明確하고 共通된 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正規簿記의 原則은 確實性原則의 效果를 達成하여야 한다. 이것은 “企業會計는 會計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確實한 效果가 確保되도록 處理한다”는 原則 自體가 正規簿記의 原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原則은 上記한 諸 原則에 의하여 자연히 達成 될

(16) 拙稿, 上揭論文.

(17) 拙稿, 上揭論文.

(18) 企業會計原則 第1章 第1節 第2, “正規簿記의 原則, 企業會計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正規의 原則에 따라 簿記의 정확한 會計帳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19) 黑澤清, 近代會計學; 春秋社, 1966, p.297.

수 있는 것으로 구태어 獨立시킬 必要가 없는 것이다.

또한 明瞭性의 原則과 眞實性의 原則도 그 內容이 重複된다. 前者는 “企業會計는 財務諸表에 의하여 利害關係者에게 必要한 會計事實을 明瞭히 公開하고 企業의 經營, 財政狀況에 관한 判斷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後者は “企業會計는 企業의 經營成績과 財政狀態에 관하여 眞實한 報告를 提供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明瞭性의 原則은 眞實性의 原則의 內容을 그대로 包含시키고 있다. 實際로 “眞實한 報告”라는 의미는 상당히 難解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眞實한 報告”란 常識으로 생각하는 事實과 表示와의 一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眞實이라 함은 “合意에 의한 眞實”(truth by consent)인 것이며 眞實에의 欲求와 이를 制約하는 技術的, 經濟的, 社會的障礙間의妥協點을 一定한 規約에서 찾으려고 하는 “慣習에 의한 眞實”(truth by convention)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眞實은 客觀化手段을 통한 眞實性의 探求라고 할 것이다.⁽²⁰⁾ 따라서 眞實性의 原則이라는 難解한 이름의 原則보다는 客觀性의 原則이라고 하여 企業會計는 立證할 수 있는 客觀的인 資料에 의거하여 處理되어야 한다”는 原則이 補充되어야 할 것이다. 이 原則은 既存의 單一性의 原則도 包括하게 된다.

單一性의 原則이란 “株主總會, 證券去來所, 金融機關, 稅務官署등에 提出하기 위하여 서로 形式이 다른 財務諸表를 作成할 必要가 있을 경우에도 그 內容에 異同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原則인데 이는 客觀的인 資料를 使用함으로서 그 內容에 異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外國의 企業會計原則인 不偏性의 原則(freedom from bias) 즉 “會計情報은 서로 대립되는 利害關係者들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는 일이 없이 公平하게 測定 傳達되어야 한다”는 原則이 補完된다면 더욱 완벽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現在 있는 剩餘金區分의 原則과 같은 것은 一般原則의 對象이 될 것이 아니고 剩餘金處理 및 剩餘金計算書에서 다시 說明할 수 있는 原則이므로 削除하는 것이 合理의 일 것이다.

2. 財務諸表의 內容과 樣式의 補完

우리나라 現行 企業會計原則에는 財務諸表의 內容으로서 損益計算書, 剩餘金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貸借對照表와 財務諸表附屬明細表等 5種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剩餘金計算書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는 剩餘金計算書 한가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剩餘金計算書는 決算時에 作成되고, 剩餘金處分計算書는 次期中에 開催되

(20) 趙益淳, 現代會計學; 博英社, 1963, pp.28-29.

는 株主總會의 결의를 거친 다음에 作成되어 時點이 달라지지만 결국 剩餘金處分計算書의 項目이 剩餘金計算書에 다시 記載作成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企業會計原則에 있어서 財務諸表의 作成 樣式은 報告式으로 한다고 하고, 그 理由로서는 會計에 知識이 없는 사람이 알기쉽게 報告式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實제로 計定式의 경우도 報告式에 비해 不便한 점이 없으며 오히려 會計를 아는 사람에게는 보다 便利한 편이므로 兩者를 다같이 使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計定式을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은 報告式의 内容도 理解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實제로 最近 銀行의 貸借對照表는 計定式으로 新聞紙上에 많이 公告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는 合併企業 및 關係會社에 대한 財務諸表作成에 대한 言及이 없다. 그런데 1970年代에 이르러 企業經營의 合理化와 企業의 投資活動의 增大로 많은 合併企業이 생기고 있고 이는 全世界的인 주체이므로 우리도 APB 報告書의 財務諸表作成原則⁽²¹⁾과 같이 聯結財務諸表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直接 또는 間接으로 50% 以上的 株式을 所有하는 關係會社의 財務諸表는 一定한 基準에 따라 母會社의 財務諸表에 聯結하여 表示함으로서 會社別로 分離시켜 公告하는 것보다 充實한 内容을 公開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損益計算書 内容의 補完

1) 包括主義 採擇問題

周知하는 바와 같이 損益計算의 方法에는 當期業績主義와 包括主義가 있다. 現在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當期業績主義를 採擇하고 있는데 비해⁽²²⁾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는 점차 包括主義를 택하고 있다.⁽²³⁾勿論 完全한 包括主義는 아니나, AICPA의 會計研究回報 (ARB) No. 9은 當期業績主義를 修正하여 經常項目과 經常外項目으로 나누어, 包括的으로 表示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⁴⁾.

이것은 當期業績主義에서 偶發的 損益이나 前期損益의 修正損益을 利益剩餘金計算書에 計上하는 이유는 이것이 非反復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이것을 長期間에 걸쳐서 살

(21) AICPA, APB, op. cit., p.92.

(22)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3節 第4, 損益計算의 修正, “前期損益의 修正이 必要한 경우에는 그 年度의 損益計算書에 큰 影響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限하여 그 年度의 營業外損益으로서 修正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利益剩餘金으로서 修正하여야 한다.”

(23) 日本의 경우는 1969年 12月에 大藏省 企業會計 審議會報告에서 損益計算書를 經常項目과 經常外項目으로 表示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4) 拙稿, 前揭論文

펴보면 이러한 偶發的인 損益도 반복되어 發生하므로, 特定한 單一年度에는 관계되지 않 을지 모르지만 事件(events) 發生을 中心으로 數個年度에 걸쳐 關聯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特殊한 損益을 利益剩餘金計算書에 計上한다면 期間損益을 조작할 수 있으며, 會計의 知識이 없는 사람은 損益計算書와 剩餘金計算書와의 관계를 이해 못하고 損益計算書만을 가지고 모든 營業成績을 表示하고 있다고 誤解할 염려가 있다. 이로 因하여 해당 企業의 收益力評價에 過誤를 犯할 염려가 많은 것이며, 이는 一般原則중의 明瞭性 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包括主義에 의하여 損益計算書의 當期純損益計算에 모든 損益項目을 포함시키되, 當期業績下의 損益計算書와 利益剩餘金計算書에 記載될 損益을 각각 經常損益과 特別損益⁽²⁵⁾으로 區分하여 記載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일 것이다. 이에 따라 損益計算書는 營業損益計算, 經常損益計算 및 純損益計算의 세 區分으로 나뉘 게 될것이다.

經常損益 計算區分에 記載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營業外 損益項目(例; 收入 또는 支給 利子 割引料, 有價證券賣出損益等) 중 經常的으로 發生하는項目으로 特別損益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된다. 純損益計算의 區分은 經常損益計算의 결과를 가지고 前期損

(25) 特別損益에 속하는項目은 다음과 같다.

1) 臨時損益

- i) 固定資產賣却損益.
- ii) 轉賣以外의 目的으로 取得한 有價證券의 賣却損益.
- iii) 災害損失

2) 前期損益修正

- i) 過年度에 계상한 負債性 充當金의 過不足 修正額.
- ii) 過年度에 計上된 減價償却의 過不足 修正額.
- iii) 過年度에 계상된 在庫資產評價修正額.
- iv) 過年度 債却債權推遲益.

그러나 特別損益에 속한項目이라 할지라도 金額이 僅少하거나 每期 經常的으로 發生한다면 經常損益計算에 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日本 大藏省 企業會計 審議會 報告 1969.12.6)

한편 美國의 AICPA의 ARB No. 9에서는 日本의 特別損益에 該當하는事項, 換言해서 當期純利益을 計算하는데 있어서 前期에 관계되는 4가지 條件의 修正事項을 當期純利益에서 控除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 4가지 條件은 첫째, 過去期中 特定한 期間과 實际히 關聯된 경우,
둘째, 前期의 財務諸表作成日 以後에 發生한 經濟變動에 영향을 받지 않은 事項,
세째, 經營自體보다 擔當者의 情況에 結果가 주된 影響을 받을 때,
네째, 이러한 決定이 내려지기 前에 合理的인豫測이 不可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經常外項目의 例로서는 다시 말하면 正常的인 企業去來에서 非反復的으로 나타나는 事項의 例로서

- 첫째, 事業의 重要한 一部 또는 施設의 廢棄 또는 賣却,
둘째, 短期投資 아닌 長期投資 資產의 賣却
세째, 非正常的인 變動으로 인한 營業權의 一時의 債却 또는 開發年度의 開發費金額 債却
네째, 財產의 沒收 또는 徵發
다섯째, 主要한 換率의 調整

益修正額, 固定資產處分損益等의 特別損益을 기재하여 當期純利益을 計算하게 된다.

2) 内部利益의 除去

本支店間 또는 同一企業의 各經營部門相互間에 商品 또는 役務의 移轉 및 提供으로 인하여 發生된 内部利益은 賣出額 및 賣出原價를 算定할 때 除去하여야 한다. 内部利益의 除去方法은 合併損益計算書에 賣出額中 内部賣出額을 區分하고, 期末在庫에 包含된 内部利益額을 控除하는데 이때 合理的인 内部利益率을 計算하여야 한다.

3) 當期純利益의 區分表示

當期純利益은 지금까지 納稅前 純利益을 의미하여 왔다. 그러나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關係稅法에 의해서 당연히 징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納稅前 純利益을 表示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當期分의 法人稅 또는 所得稅를 控除함으로써 納稅後 純利益을 表示해 주는 것이 그企業의 配當能力을 明確히 나타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法人稅等의 稅金 更正決定에 의하여 追徵稅額 및 還付稅額이 있을 경우에는 納稅前 純利益에 加減하여 表示하는 것이 特別損益項目과 區別하는 의미에서 적당할 것이다.

4) 實現主義의 具體的 適用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實現主義⁽²⁶⁾와 营業收益의 測定⁽²⁷⁾에서 未實現收益의 計上을 禁止하고 있으나 이러한 特殊販賣의 收益實現時點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 어느 곳에도 說明이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說明을 財務諸表規則에 明示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① 特殊販賣에 대하여

委託販賣는 受託者가 委託品을 販賣한 날을 賣出收益의 實現으로 보는 것이 엄밀한 의미의 實現主義이나 實際問題로는 委託者가 積送品의 販賣時點을 確認하기 어려우므로 便宜上受託者로 부터 賣出計算書를 決算日까지 받아 販賣事實이 確認되면 當期의 賣出收益으로 計上할 수 있을 것이다.

試用販賣의 경우는 販賣條件上商品을 發送 또는 양도하는 時點에서 收益이 實現된 것

(26) 第2章 第1節 第2目 第2, 實現主義,

“收益의 發生은 實現時期를 基準으로 한다. 未實現收益은 原則적으로 當期의 損益計算에 計上하여서는 아니 된다. 未受收益을 貸借對照表 資產의 部에 記載하였을 때에는 이를 當期의 損益計算에 計上한다.”

(27) 第2章 第1節 第2目 第3, 营業收益의 測定 (實現主義), “營業收益은 實現主義의 原則에 따라 商品의 販賣 또는 役務의 提供에 의하여 實現된 것에 限한다. 그러므로 아직 販賣가 完了되지 아니한 積送品, 試用販賣, 割賦販賣, 諸約販賣등에 관한 未實現收益은 原則적으로 當期의 收益에 計上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長期의 未完成請負工事에 관하여서는 適正한 利益을 推算하여 이것을 當期의 收益에 計上할 수 있다.”

으로 認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顧客으로 부터 買入할 意思의 通報가 있을 때 비로소 賣出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豫約販賣의 경우는 豫約金을 미리 받는것이 보통이지만 決算日까지 商品을 引渡하거나 서비스가 完了되어야 비로소 當期의 賣出額으로 計上하고 殘額이 있을 때에는 貸借對照表에 負債로 計上해야 할 것이다.

割賦販賣의 경우는 商品이 일단 引渡된 時點과 代金이 回收된 時點의 두가지를 賣出收益의 實現時點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代金回收가 長期에 걸쳐 分割되어 이루어지고 貸損危險率이 높아 回收될 때까지 不確實性과 複雜한 事情이 많으므로, 回收時點이 권장된다.

② 工事收益에 대하여

長期의 都給工事에 있어서 收益을 計上하는데는 工事進行 基準과 工事完成基準의 두 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²⁸⁾

工事進行基準은 決算期末의 工事進行程度를 見積하여 이에相當하는 工事의 收益推定額을 當期의 損益計算에 計上하는 것인데, 工事が 完了되거나 또는 引渡된 날을 工事收益의 實現時點으로 計上하는 工事完成基準을 采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⁹⁾

③ 原價差額의 處理

우리나라 財務諸表規則에는 原價差額의 記載形式에 대해서 言及이 없다. 現在 우리 企業界에도 標準原價 또는 豫定原價會計制度를 使用하는 곳이 점차 增加하는 추세이므로 다음과 같이 原價差額의 處理形式을 表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賣出原價

1. 期初製品在庫額	xxx
2. 當期製品製造原價	<u>xxx</u>
合計	xxx
3. 期末製品在庫額	<u>xxx</u>
標準(豫定)賣出原價	xxx
4. 原價差額	<u>xxx</u> <u>xxx</u>

原價差額은 賣出原價에 配賦하는 동시에 在庫資產 原價에도 科目別로 배부하여⁽³⁰⁾ 貸借

(28) 現行 企業會計原則의 경우에는 工事進行基準과 工事完成基準을 選擇 適用하게 되어 있다. 上揭文參照.

(29) 이 경우 工事代金을 받지 못했을 때 未收收益이 發生될 것이다. 現在 工事完成基準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設建假計定의 對替時點決定도 문제가 되어 있다.

(30) 이 경우 補充率法(supplementary rate method)을 使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對照表上에 科目別로 各 資產科目的 原價에 包含시켜 記載하는 것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4. 貸借對照表內容의 補完

1) 資產에 關한 補充事項

우리 나라 企業會計原則은 第4章 第2節에서 資產의 區分을 간단히 說明하고 있다. 즉 “1年基準(one year rule)”에 의해 流動資產과 固定資產을 區別하고 이외에 移延計定을 더 붙여 資產을 3區分하고 있다.⁽³¹⁾

그러나, 經營活動循環期間이 通常 1年未滿인 것이 普通이지만 循環期間이 1年以上되는 業種은 1年以上인 長期가 流動資產과 固定資產區別의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日本의 企業會計原則과 같이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類할 것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³²⁾

또한, 資產의 區分 역시 現行과 같이 3區分만을 할 것이 아니라 現行의 流動資產이나 固定資產概念에 包括시킬 수 있는 株主, 任員, 從業員에 대한 債權, 使用의 制限이 되어 있는 特別한 現金과 預金 其他 移延資產에 속하는 것 이외의 長期資產은 其他資產이라고 하여 獨立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行 財務諸表規則에는 說明이 없으나 流動資產의 범주에서 除外시켜야 할 項目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³⁾

(ㄱ) 當期以外의 營業期에 使用 또는 引出하도록 限定이 되었거나 固定資產의 取得, 建設에 用途가 指定된 것, 또는 固定負債 債還에 充當하기 위하여 積立한 現金이나 預金

(ㄴ) 1年 以內에 回收可望이 없는 資產賣却代金 또는 關係會社나 任員, 從業員에게 支給한 貸與金, 先給金 등과 같은 非經常去來에서 發生하는 受取計定

(ㄷ) 繼續的인 事業上の 利益을 위하여 支給한 費用

2) 負債에 關한 補充事項

現行 企業會計原則에서 負債의 區分은 流動負債와 固定負債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區分 역시 1年基準이다. 이에 대해서도 資產에서와 같이 特別한 경우에 一定한 基準을 사용할 수 있도록 許容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負債의 項目中 중요한 것은 充當金인데, 現行 財務諸表規則에는 固定負債에 해당하는 充當金으로 退職給與充當金과 特別修繕充當金만을 提示하고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流動負債에 속하는 充當金도 提示할 필요가 있다. 流動負

(31) 財務諸表 規則도 역시 流動資產, 固定資產, 移延計定으로 區分하고 있다 (第34條).

(32) 日本企業會計原則 註 13 參照.

(33) Paul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1965, pp.233-243을 참고로 筆者가 修正하였음.

債에 속하는 充當金의 例로서는 納稅充當金, 賞與充當金, 瑰疵保證充當金 등一般的으로 1年以內에 使用될 充當金을 들 수 있다.

3) 資產 및 負債의 評價原則

現行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은 資產의 評價原則만이 있고 負債의 評價原則에 대한 說明은 없다. 뿐만아니라 外國과의 交流擴大로 인하여 發生되는 外貨表示의 資產 및 負債에 대한 評價에 대한 說明 역시 없는 것이다. 따라서 換率變動差額處理에 대한 資產 및 負債의 評價原則이 追加되어야 한다.⁽³⁴⁾ 그리고 其他 贈與 또는 無償으로 取得한 資產과 現物出資 및 交換에 의하여 取得한 資產의 評價에 대한 說明도 없는 바, 이는 客觀的인 市場價額 또는 公正한 評價額을 取得原價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現行 企業會計原則은 有價證券에 대한 評價를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으로서 一時의 으로 所有하는 것은 原則의으로 時價에 의하여 評價한다. 다만 市場의 狀況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減價를 考慮하여 評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證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實제로 市場성이 없는 有價證券에 대한 評價原則도 提示 하여야 될 것이다. 이는 原則의으로 買入原價에 手數料 等의 附帶費用을 加算하고 여기에 先入先出性 또는 平均原價法을 적용하여 算定한 取得原價를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단, 當該會社의 財政狀態가 惡化되어 株式의 價值가 下落된 것이 客觀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그에相當한 減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일 경우 時價에 의한 評價가 間接的으로 許容이 되어 있으나, 時價選擇의 時點에 대한 說明은 없으므로一般的인 경우인 決算日以前 30日 동안의 證券去來所 時勢에 의한다는 것을 表示할 必要가 있다.⁽³⁵⁾

IV. 結 言

지금까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問題點 및 改正方向을 美國公認會計士協會에서 發表한 APB 第 4號報告書와 함께 考察하여 왔다. 同 報告書는 지난 40餘年間 美國의 企業會計原則에 대하여 계속적인 中間 研究結果로서 一部의 냉혹한 批評은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美國에서一般的으로 認定된 企業會計原則을 集大成하였다는 데에는 疑問의 여지가 없으며, 계속 第5號, 第6號 報告書가 發刊되어 이들을 修正, 補充해 줄 것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지난 十數餘年間 政府가 告示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

(34) 이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拙稿, 前揭論文, pp. 18-21 參照.

(35) 이에 대해서는 이미 企業界의 慣例로서 인정되고 있다.

대하여 뚜렷한 改正作業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으며, 이제 새로운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正作業이 역시 政府의 主導로進行되고 있다.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은 一般會計의 規範으로서 그 영향이至大한 것이니만큼 優重히 改正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原則이나 規則은 全體의 構成, 用語 및 그 内容에 이르기까지 細部의 注意를 다하여 엄격한 심의와 公聽會를 걸쳐 改正公布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964年5月 27日에 告示된 財務諸表規則이 商法의 改正에 맞추어 急速히 改正함으로써 오히려 改惡이 되었다는 實例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³⁶⁾ 뿐만 아니라 政府는 이들 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改正과 아울러 이들의 母法인 商法도 改正을 할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現在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사이에 差異가 나는 事項을 이번 기회에 修正해야 할 것이다.⁽³⁷⁾ 그리고 가급적 지난 10餘年間 變化해온 會計慣習을 이번 改正에 反影시켜야 할 것이다.

本論에서는 現在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問題點을 廣範하게 摘出하여 論者의 意見을 提示하여 보았다. 그러나, 實際로는 問題點 하나하나에 대한 改正案이 論文題目이 될 수 있을 정도의 理論的 問題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原則 및 規則의 改正是 商法 및 各種 稅法과도 연결을 지어 名實 共히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真實한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수시로 經營環境 및 會計慣行의 變更에 따라 修正해 나가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本論文은 年前에 論者の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向이라는 論文과 함께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改正方向의 一端에 대해서 論述하였거니와, 現在作業中에 있는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改正에 一助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36) 李台瀬, “改正 財務諸表 規則의 論評”, (韓國公認會計士會 第79回 月例會發表, 1966. 11.)

(37) 이것은 財務諸表規則이 商法의 改正에 따라 1964年 5月 27日에 用語修正을 中心으로 改正을 하였으나 企業會計原則은 改正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企業會計原則에는 株式發行差金, 支拂이음, 前拂費用으로 表示되어 있으나, 財務諸表規則에는 株式發行超過金, 支給이음, 先給費用으로 表示되어 있다.